

ISAP 4

국제계리업무기준 4
IFRS 17 보험 계약
(ISAP 4)

제작: IAA 계리기준위원회 ISAP4 태스크포스

2018 년 2 월 27 일

서문

본 국제계리업무기준(ISAP)은 계리업무의 기준을 제정하는 기관이 고려해야 할 모델이다.

국제계리사회(IAA)는 계리업무기준 제정 담당기관이 본 ISAP 에서 제공하는 국제계리업무기준과 상당부분 일치하며 해당기관 관할지역에서도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계리기준을 유지하도록 권장한다. 이는 다음을 통해 가능하다:

- 초안 수정에 한해 본 ISAP 를 업무기준으로 채택
- 본 ISAP 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면서, 계리업무기준 제정 기관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범위내에서 본 ISAP 의 문구를 수정하여 맞춤 채택
- 특정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본 ISAP 가 적절한 기준임을 공인
- 본 ISAP 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의 기준을 수정,
- 기존의 기준이 이미 상당부분 본 ISAP 와 일치함을 확인

계리 업무기준 제정과 담당기관에 의해 공표된 계리업무기준은 다음의 경우에 본 ISAP 와 실질적으로 일치한다고 간주된다.

- 본 ISAP 에 명시된 원칙과 관련하여 중대한 차이가 없을 경우
- 업무기준이 본 ISAP 와 모순되지 않을 경우.

각국 계리업무기준 제정 담당기관의 소관에 따라 IFRS 17 의 변형을 채택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현지 계리업무기준 작성시 그에 따라 ISAP 4 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다.

계리업무기준 제정 기관이 본 ISAP 를 채택하거나 공인 시, 본 ISAP 는 여러 측면에서 ISAP 1 과 ISAP 1A 를 기반으로 하고있기에 기존의 기준이 ISAP 1 과 ISAP 1A 와 상당부분 일치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마찬가지로, 본 ISAP 의 임의적 수정이나 본 ISAP 와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존 업무기준의 수정은 본 ISAP 가 ISAP 1 과 ISAP 1 에 상당부분 의존한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만약 본 ISAP 가 채택을 목적으로 번역이 된다면, 해당 기관은 ‘1.6 상호참조’에 설명 된 대로 “must”, “should”, 그리고 “may” 에 개념을 구현하는 3 개의 동사를 선택해야 한다.

본 ISAP 는 보험계리 실무의 모델기준 이며, 따라서 어떠한 계리인에게도 구속되지 않습니다.

본 ISAP 는 IAA 이사회에 의해 XX 월 XX 일에 채택되었다.

[주석: 본 ISAP 를 채택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르시오:]

1. 본문의 “ISAP”를 각국 계리기준 기관 이름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1.3., 2.3.52.1., 2.2.2., 2.3.52.3., 2.3.52.4., 2.3.52.5., 2.6.13. 및 3.1 의 ISAP 1 및 ISAP 1A 에 대한 참조를 수정하십시오. 적절한 경우 ISAP 1 또는 ISAP 1A 를 직접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ISAP 1 및 ISAP 1A 와 실질적으로 일치하는 각국 계리기준을 언급하도록 해야 한다.
3. 1.71.7 절에서 적절한 구절과 낱자를 선택하십시오
4. 이 기준을 검토하여 현지 법률 및 전문 직업 행동 강령과의 충돌을 해결한다.
이 서문 (이 주석 포함)과 1.7 단락과 관련된 각주를 삭제하십시오

ISAP 4 소개

국제 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 관련 IFRS 17 을 2017 년 5 월에 발표하였다.

본 ISAP 는 IFRS 17 과 관련하여 계리 서비스를 수행 할 때 보험 계리사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IASB 에서 2017 년 5 월 프로젝트 요약본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IFRS 17 은 보험사에서 보험계약을 성립 시 대차 대조표에 다음의 총액으로 보고한다.

- a. *이행 현금 흐름 - 현금 흐름의 타이밍 및 현금 흐름 리스크 조정을 포함한 할증, 청구액, 수당 및 지불 비용 등 보험자가 징수 할 것으로 기대하는 금액의 현재 추정치*
- b. *계약 서비스 마진(CSM) - 미래 보험 보장을 제공함으로써 예상되는 이익 (예: 미납이익).*

IFRS 에 따라 재무제표를 보고하는 보험사는 IFRS 재무제표에 공시된 모든 정보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는 IFRS 재무제표에서 계약의 인식, 성립 및 해지, 분류, 계리 방법 및 가정법, 측정 계산 및 공시를 담당함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IFRS 17 과 관련하여 계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계리사는 보험사에 결정을 내리고, 의사 결정을 요구하고, 필요한 계산을 수행하거나, 상기 사항 중 여러가지를 함께 수행 할 수 있다.

본 ISAP 는:

- IFRS 17 과 관련된 계리 기준이 각국을 아울러 수렴될 수 있도록 한다.
- IFRS 17 과 관련하여 제공되는 계리 서비스에 대한 대중의 신뢰를 얻는다.
- IAA 와 IASB 간의 양해각서(MOU)에 고안된 바와 같이, 국제적으로 높은 수준의 투명하고 호환성 높은 재무 보고서를 제작함에 있어 IASB 의 업무를 지원하겠다는 IAA 의 노력을 입증한다.

제1장. 총칙

- 1.1. **목적** – 본 ISAP 는 IFRS 17 과 관련하여 계리 서비스를 수행할 때 계리사에게 지침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며, 이를 통해 다음사항이 성취될 수 있다.
 - 계리서비스가 전문적이고 철저하게 수행된다.
 - 결과가 필요에 부합되며, 명확하고 평이하게 설명된다.
 - 사용된 가정과 방법론(모델과 모델링 기법을 포함)을 적정수준으로 공개한다.
- 1.2. **범위** – 본 ISAP 는 IFRS 17 과 관련하여 계리사가 보험사의 실제 혹은 추정 재무제표를 작성할 경우 적용된다. IFRS 17 과 관련하여 기타 계리서비스를 수행하는 계리사 (예: 회계 감사 또는 감독 기관과 같은 제 3 자에게 조언하는 계리사 또는 매입과 관련하여 잠재적 구매자에게 조언하는 계리사)는 담당 업무에 맞춰 본 ISAP 의 지침을 적용해야 한다.
- 1.3. **ISAP 1 과 ISAP 1A 간 관계**–ISAP 1 및 ISAP 1A 준수는 본 ISAP 을 준수를 위한 전제 조건이다. ISAP 1 과 ISAP 1A 에서 사용되는 “본 ISAP”라는 표현은 ISAP 4 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 1.4. **IFRS 와의 관계** – 본 ISAP 는 IFRS 17 및 IFRIC 또는 SIC 의 해석 등 여타 IFRS 의 내용과 관련되어 있으며, 20XX 년 X 월에 발표되었습니다. [ISAP 4 최종 협의 날짜] 본 ISAP 의 지침은 본 ISAP 에서 반복되지 않는 IFRS 17 의 지침을 보완한다.
- 1.5. **언어** – 본 ISAP 는 용어집에서 정의한 다양한 용어를 사용한다. 그러한 용어는 밑줄과 파란색으로 강조표시가 되어있다. (e.g., [actuary](#)).

또한 본 ISAP 는 IFRS 의 핵심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 경우 IFRS 17 에서 사용되는 의미를 갖는다. 이러한 용어는 이중 밑줄과 녹색으로 강조표시가 되어있다. (e.g., [insurance contract](#)).
- 1.6. **상호 참조** – IFRS 17 또는 본 ISAP 에서 언급된 다른 IFRS 가 IASB 에 의해 수정, 재 작성, 폐기 또는 대체 되거나 IFRIC 에 의해 20XX 년 XX 월 이후에 해석되는 경우, 계리사는 해당 시점에 본 ISAP 의 지침이 어느 범위까지 적용한 수준인지 고려해야 한다.
- 1.7. **효력발생일** – 본 ISAP 는 [계리 서비스가 시행된 날/계리 서비스가 시작된 날/IFRS 재무제표 보고기간 종료일에 계리서비스가 시행된 날]이나 그 이후 [20XX.XX.XX]에 유효하다.

제2장. 적용

2.1. 관련지식 요구사항 – ISAP 1 2.2 '관련 상황의 인식'을 적용할 때, 계리사는 다음과 같이 과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정보와 지식을 충분히 습득하거나 이해해야 한다.

- a. IFRS 17 과 여타 IFRS 의 적용가능한 항목(예: 공정 가치 결정 시의 IFRS13), 보험사의 회계 정책 및 IFRS 재무제표 작성 시 적용되는 관련 절차
- b. IFRS 17 을 준수하는 계리법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에 대한 보험사의 입장
- c. 보험사의 상품 및 운영
- d. 여타 상황에서 보험사가 사용한 방법론, 가정법 및 차이점의 근거
- e. 법률이 IFRS 17 의 적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의 여부
- f. 관련 감사 기준

2.2. 중요성 – 계리사는 계리서비스별로 정보 항목의 중요성, IFRS 재무제표의 작성 및 재무제표 감사의 차이를 이해해야 한다.

2.2.1. 적절하다 판단 될 경우, 계리사는 재무제표의 정보 항목에 관한 주요고객이나 보험사의 자문을 요청하여야 한다.

2.2.2. ISAP 1 2.4 '중요성'을 적용 시, 계리서비스에 대한 계리사의 한계점은 IFRS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보험사의 한계점 또는 감사의 한계점 보다 커서는 안된다.

2.2.3. 본 ISAP 의 모든 항목에서 쓰이는 '중요성'이란 표현은 계리서비스와 관련하여 쓰인다.

2.3. 비례의 원칙 – ISAP 1 1.5 '합리적 판단' 항목 가운데 1.5.2. 를 적용할 시에, 계리사는 정보 항목의 중요성을 고려해야 한다. 계리사가 권고한 특정 가정법이나 방법의 개선 정도는 계리서비스의 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비례해야 한다.

2.4. 보험계약의 인식, 분리, 성립, 해지, 변경 – 계리사는 다음의 과정을 담당해야 한다:

- a. 보험계약의 인식
- b. 보험계약의 구성 요소 분리
- c. 보험계약의 성립 또는 해지

- d. 보험계약 변경이 계약의 해지인지 또는 신규계약으로의 수정으로 간주되는지의 여부 또는 해당 변경안이 이행 현금 흐름의 추정치의 변경으로 간주되는지의 여부

ISAP 1 2.7. '계리사가 정한 가정과 방법론' 또는 ISAP 1 2.8. '2 지정된 가정과 방법론'이 적용됩니다.

계리사는 변동 사항의 이론적 근거와 그 영향을 포함하여 보험 계리 보고서에 상기 프로세스의 변경 사항을 공개해야 합니다.

- 2.5. 계리방법** - 계리사는 ISAP 1 2.7 '계리사가 정한 가정과 방법론' 또는 ISAP 2.8 '지정된 가정과 방법론'을 따라 보험계약의 각 그룹에 적용 할 적절한 계리방법(General measurement approach, premium allocation approach, 또는 variable fee approach)을 선택하는 과정을 담당해야 한다.

계리사는 계리보고서에서 상기프로세스의 변경, 변경의 근거 및 영향에 대해 공개해야 한다.

2.6. General Measurement Approach

- 2.6.1. 가정 선택을 위한 일반적인 접근법 -계리사는 계리적 가정에 대해 보험사에게 조언할 때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가정을 설정하기 위해, 보험계약의 보장범위에 따라 유사한 위험군으로 분류할 것을 고려
- b. 현행 가격 책정에 대한 가정은 IFRS 17 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유의.
- c. 가설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연결고리를 만든다. (예: 옵션 수행 패턴 관련 가정은 경제적 시나리오와 연결되어야 함)
- d. 현재 추정치의 잠재적인 비대칭 분포(예: tail event 같은 극단적인 케이스를 처리하기 위한 가정 및 시장 조건에 의해 유발되는 보장)을 고려해야 한다.
- e. 다양한 출처, 혹은 기간 동안의 정보를 결합할 때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 f. 시간 경과에 따른 역선택과 그 영향을 고려

2.6.2. 가정 업데이트 프로세스 - 계리사가 권장되는 가정법의 업데이트 프로세스를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하는 경우, 회계정책의 변경 또는 IAS 8 '회계 정책, 회계처리기준 및 오류의 변경' 에 의해 정의된 회계처리기준의 변경에 관해 계리사는 반드시 주요고객과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계리사는 보고서에서 상기 프로세스의 변경, 변경의 근거 및 영향에 대해 공개해야 함

2.6.3. 보험 리스크 -보험 리스크 측정을 위한 가정법에 대해 주요고객 또는 보험사에 조언할 때, 계리사는 다음 관련 요소들을 고려해야 한다.

- a. 보험 리스크의 성격
- b. 증권계약자의 성격과 보험 판매 방식
- c. 보고 및 지불 지연 관련 과거 이력과 미래 예상치
- d. 과거 발생한 클레임(클레임 인플레이션) 조정 이력
- e. 만약의 사태를 대비한 비용
- f. 보험사의 업무
- g. 추세 및 시기적 변동과 같은 외부 요소 및 법률, 경제, 입법, 규제 감독, 인구통계학적, 기술적 및 사회적 환경의 변화

2.6.4. 옵션 - 보험사 또는 주요고객에게 옵션 행사 패턴 예측에 대한 조언을 할 때, 계리사는 다음을 포함하여 관련 요인 및 변경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 a. 보험구매에 있어 보험계약자의 합리적 판단, 보험계약자의 상대적인 이점, 보험계약자에 대한 옵션 행사
- b. 보험계약의 판매 및 서비스 방식
- c. 보험 혜택의 일정 변경
- d. 특정 옵션의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취소율의 단기간 급등
- e. 시장 조건, 법률, 경제, 입법, 규제, 감독, 인구통계학적, 기술적 및 사회적 환경과 같은 외부요인

2.6.5. 유지보수비용 - 현금흐름을 유지보수비용으로 계획
관련하여 주요고객이나 보험사에게 조언을 할 경우, 계리사는
다음을 포함한 관련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a. 보험사의 원가 회계 및 비용 배분 정책
- b. 측정일 현재 존재하는 의무이행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추정
비용. 이 추정치는 보험사의 과거 지출과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
- c. 모든 아웃소싱 계약

2.6.6. 배당 요소가 포함된 보험계약 또는 기타 변동 현금흐름 - 주요 고객
또는 보험사에 자문 시, 계리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를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할인율을 선택하여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서 예상되는 기대 수익률을 반영하는 이행 현금
흐름을 측정한다. 자산에 대한 수익은 미래의 예상 경제 상황과
일치하는 미래 기대치를 사용하여 예측되어야 한다.
- b. 기본 항목에 따른 현금 흐름에 최소 혹은 최대 제한이 있는 경우,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조정 및 예상되는
할인율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2.6.7. 보험사의 재량 -보험사의 재량을 반영하기 위해 가정이나 보험사에
자문을 제공할 때 계리사는 다음 항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기대
또는 제한을 고려해야 한다.

- a. 보험사의 마케팅 및 홍보물
- b. 보험사의 미래지향에 관련된 과거 관행
- c. 보험사의 현재 정책
- d. 시장 정책
- e. 관련 당국의 판결

2.6.8. 재보험 -주요고객 또는 보험사에게 재보험 계약의 측정과 관련 하여
조언 시, 계리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여러 재보험 계약 하에서 회수 가능한 금액을 산정 시 재보험 회수의 순서를 고려해야 한다.
- b. 회수 불가능 금액을 산정할 때 재보험사의 재무 상태와 재보험사의 채무 불이행이 다른 재보험사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범위를 고려해야 한다.
- c. 보험사가 발행한 재보험 계약의 이행 현금 흐름을 추정 할 때 다음과 같은 관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 i. 기본 보험 계약의 보험 계약자 및 재재보험사를 포함한 모든 출자자의 가능한 옵션과 관련하여 예상되는 행동
 - ii. 임의재보험 편성을 위한 인수 및 양도자의 청구 관리 프로세스를 포함한 인수 및 관리 절차
 - iii. 한도 복원의 영향
 - iv. 재재보험사 포함한 양도 발행자에 의한 디폴트
 - v. 미래 기간 현금흐름을 예측할 때, 기본보험계약의 발행인과 각 재보험사의 재취득, 취소, 또는 대체지불의 이점의 범위를 고려.

2.6.9. 환율(환전) - 주요고객 또는 보험사에게 이행 현금 흐름을 여러 통화로 산정할 것을 권고할 때, 계리사는 예상되는 미래 환율 변동 및 환전으로 인한 불확실성을 반영해야 한다.

2.6.10. 할인율 - 계약자에 할인율 관련하여 자문 시, 계리사는:

- a. 측정 가능한 시장 데이터가 이용 가능한 기간을 넘어서는 현금흐름에 적용되는 할인율 도출 시, 현재의 환율이 시간경과에 따라 어떻게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지 고려해야 한다.
- b. 보험사의 투자 자산의 수익에 의존하는 보험 계약의 현금 흐름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도출하는 경우 다양한 이해 관계자에 대한 의사 소통 및 예상되는 계약자 행동을 고려하여 보험사의 투자 정책을 고려해야한다.
- c. 할인율에 대한 비유동적 조정수치를 도출할 때:
 - i. 다양한 시장 조건 하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안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접근법

- ii. 관찰된 자산 수익률에서 신용 또는 기본공제액을 차감할 때 사용 가능한 시장 데이터(예: 신용 디폴트 스왑 스프레드)

2.6.11. 보험 인수 현금 흐름 - 계리사는 보험 계약 현금 흐름이 보험계약의 각 포트폴리오에 일관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험 인수 현금 흐름은 실제 취득 비용과 동일한 액수여야 함.

2.6.12. 비재무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조정 -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해 자문 시, 계리사는:

- a. 보험 계약에 내재된 비재무적 위험을 파악한다.
- b. 보험사가 비재무적 리스크를 감당하기 위한 보상으로 요구하는 사항을 평가할 시:
 - i. 보험 개체가 보상 위험에 포함되는 모든 다변화 이익을 고려한다.
 - ii. 보험 개체의 자본 관리, 위험 관리 및 가격 책정 정책과 같은 관련 정보의 출처를 고려한다.
- c. 아래의 방법가운데 하나를 선택한다:
 - i. 미래 현금 흐름의 추정에 사용된 가정과 일치하는 가정을 사용
 - ii. 보험 계약 포트폴리오 간의 위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할 만큼의 세밀함
- d. 보험 계약제에게 위험이 전달되는 메커니즘(예: 참여 또는 조정 기능이 있는 계약)을 적절히 허용한다.
- e.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조정 관련하여 재보험사에 의한 불이행 가능성으로 인해 야기된 불확실성 평가
- f.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하여 계산된 총 리스크 조정의 총액과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하여 양도된 리스크 조정 총액간의 차액이 보험사가 재보험 리스크에 대한 보상을 적절히 반영하는지 여부를 고려한다.
- g. 특정 신뢰수준 이외의 기법으로 비재무적 리스크 관련 리스크 조정이 판단되는 신뢰수준 공시(IFRS 에서 요구하는)에 관하여 자문 시, 다음을 고려한다.
 - i. 모든 사업에 대한 비재무적 리스크를 다양화 하는 보험사의 능력

- ii. 내재된 불확실성의 해석에 대한 신뢰수준과 그러한 불확실성을 계리사 보고서에 공시할지의 여부

2.6.13. 집합, 계약서비스 마진(CSM) – 계리사는 다음 과정을 담당해야 한다.

- a. 보험계약 포트폴리오 인지
- b. 개별 보험계약을 포트폴리오로 할당하고, 각 포트폴리오를 보험 계약 그룹으로 분류
- c. 손실부담계약에 대한 손실 구성 요소의 처리
- d. 보장범위 적용 단위 결정

2.6.14. 이전이나 사업 결합을 통한 보험 계약의 취득 – 주요고객이나 보험사에 조언할 때 계리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한다.

- a. 발행된 보험계약의 절차와 일치하는 절차를 준수
- b. 발생 청구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는 이익 연기와 관련된 회사의 정책을 따르고 즉시 손실을 인식하고 CSM 과 유사한 이행현금 흐름에 대한 과도한 대가를 상각한다.

2.7. Premium Allocation Approach(PAA) – 보험 계약 그룹에 대한 PAA 적용과 관련하여 주요고객 또는 보험사에 자문 시, 계리사는:

2.7.1. 보험사가 보험 인수 현금 흐름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접근법과 일관되게 부채를 결정하는지 여부를 인지하여야 한다.

2.7.2. 적용기간이 1 년이상일 경우 PAA 가 일반 측정 접근법의 합리적인 단순화인지의 여부를 다음을 고려하며 판단하여야 한다.

- a. 예상되는 보험 서비스 비용의 패턴과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리스크 조정의 상각, 그리고 일반접근법(general measurement approach)에 의한 CSM 의 상각은 PAA 에 따른 보험 수익 발생 예상시점과 현저히 다름
- b. 일반접근법(general measurement approach)에 따른 현금흐름의 시기와 PAA 에 따른 보험 서비스 비용의 발생 시점의 차이가 시간 가치에 대한 실질적인 조정을 초래할 것인지에 대한 예상
- c. 새로운 상황에 대한 반응으로 일반접근법(general measurement approach) 에서 미래 가정값 변경이 단순화를 무효화 할 것이라는 합리적 기대

2.7.3. 보험 계약 그룹을 정기적으로 검토하여 부당한 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조언한다.

2.8. The Variable Fee Approach - Variable fee approach 사용 시, 계리사는 2.6.8.'재보험' 항목을 제외하고는 2.6 의 지침에 따라 이행 현금 흐름을 결정해야 합니다.

2.9. 재무제표 공시

2.9.1. 계리사가 제공한 정보가 재무제표 공시에 사용된다는 것이 양도조건일 경우, 계리사는 IFRS 17 관련 공시 요구사항과 보험사의 회계정책을 준수하기위한 모든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2.9.2. 재무제표 상의 정보가 틀렸거나 부적절할 경우, 계리사는 보고서에 이를 공개해야 한다.

2.9.3. 공개된 정보의 계산 순서에 따른 변경에 대한 조언을 제공하는 경우, 계리사는 모든 조정 기간별 일관된 계산 순서를 적용하거나 변경 사항, 근거 및 영향을 보고서에 공개해야 한다.

2.10. 변동 – 소급법이 실용적이지 않은지에 대해 주요고객이나 보험사에 조언할 때, 계리사는 다음을 포함한 관련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 a. 초기 이행 현금 흐름을 결정하는 데 필요한 과거 정책 데이터의 가용성 및 신뢰성
- b. 과거 상품에 대한 정보의 가용성 및 신뢰성
- c. 다양한 보험 계약의 수명 동안 이루어진 초기 가정과 후속 변경 사항을 결정할 수 있는 충분한 데이터의 가용성
- d. 보험 계약의 특성을 나타내는 이자율을 달성하기 위해 과거의 알려진 금리를 조정하는 데 사용 되는 방법
- e. 비재무적 위험 및 경영 재량에 대한 과거의 위험 조정을 평가하는 것이 어려움

제3장. 공시

3.1. **보고서 발행**—ISAP 1 섹션 3 및 ISAP 1A 섹션 3 이외에, 보험 계리사는 다음을 공개해야 합니다.

- 3.1.1. 일관성 있는 프로세스 또는 변경된 프로세스에서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가정 또는 방법의 변경에 대한 정보
- 3.1.2. 접근 방식의 변경의 근거 및 영향:
 - a. 보험계약의 확인, 구성 요소의 분리, 보험계약의 인식, 제거 및 수정(2.4)
 - b. 계산법 결정
 - c. 가정
 - d. 보험계약의 포트폴리오 식별, 보험계약의 그룹으로의 배분, 손실 구성 요소의 처리 및 적용 단위 결정에 대한 접근법
 - e. 공시 항목에 제공된 조정 계산 순서
- 3.1.3. 비재무적 리스크에 대한 조정이 특정 신뢰 수준 이외의 기법으로 결정될 경우에 신뢰 수준에 대한 해석에 내재된 불확실성(2.6.12.g.)
- 3.1.4. 특정 품목이나 공시의 발표에 대한 우려 (2.9.5.)